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 하고자 함

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고지 및 안내서 수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양도자가 고지된 안내서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 등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양수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높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스 : 044-201-553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 201 - 3403,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